

예산총칙

2023년도 간주예산 3 차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18,358,103	18,550,743
일반회계	612,918,449	18,387,553
특별회계	5,439,654	163,190
기타특별회계	5,439,654	163,190
의료급여특별회계	560,926	16,828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42,984	4,290
주차장특별회계	4,569,729	137,092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100,626	3,019
재정비축진특별회계	65,389	1,96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 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,336,16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,300,000천원으로 한다 .

제 8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·교부되는 국·시비보조금(구비부담분 포함) 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